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79
----------	-----

발의년월일 : 2007. 7. 4.

발의자 : 광영교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5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같은 조제6호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제7호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 위)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시본청의 실·과장급 이상 인자.</p> <p>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p> <p>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42조 ----- ----- ----- ----- -----</p> <p>제2조(범 위) (생 략)</p> <p>1. ~ 4. (생 략)</p> <p>5.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 -----.</p> <p>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 -----.</p> <p>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7. 20.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 7. 4. 광영교 의원 외 5인
2. 회 부 일 자 : 2007. 7. 5.
3. 상 정 일 자 : 제168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운영위원회 (2007. 7.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전병배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전부개정 공포 (2007. 5. 11)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개정된 법률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III. 검토의견 (보고자 : 권태환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중 개정된 법률과 관련 있는 조항의 법조항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 의 및 토 론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